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0. 26.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10.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 관련 5개 조례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괄 개정대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5개 조례
- 주요 개정사항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토록 함
-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담당주사(팀장) 명칭 변경 및 통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의 기금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사항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 2) 조직개편 시 마다 개정하여야 하는 간사 및 기금출납원 담당공무원의 행정직위 명칭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기금업무 추진에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6 호
----------	---------

제출연월일 : 2016.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대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개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나. 주요내용

-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명시(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 2)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담당주사(팀장) 명칭 변경 및 통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6.08.04 ~ 2016.08.24,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활주거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활주거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르신행정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어르신행정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구성한다”을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중 “자원재활용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원재활용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도시청결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청결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굴착팀장”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로굴착팀장”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③ ~ ⑤ (생략)</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자활주거담당주사가</u> 된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략)</p> <p>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u>자활주거담당주사</u>로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기금업무 담당팀장이</u> -----.</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기금업무 담당팀장으</u>-----.</p> <p>③ (현행과 같음)</p>

〈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③ ~ ⑥ (생략)</p> <p>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어르신행정담당주사</u>가 된다.</p> <p>② (생략)</p> <p>제12조(회계공무원) ① (생략)</p> <p>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u>어르신행정담당주사</u>로 한다.</p> <p>③, ④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 ----- ----- <u>기금업무 담당팀장이</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기금업무 담당팀장으</u>-----.</p> <p>③, ④ (현행과 같음)</p>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신규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③ ~ ⑤ (생략)</p>	<p>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6(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자원재활용담당주사가 된다</u>.</p> <p>② (생략)</p>	<p>제4조의6(간사 및 수당) ① ----- ----- ----- <u>기금업무 담당팀장이 -----</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생략)</p> <p>② 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u>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u>.</p> <p>③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기금업무 담당팀장으-----</u>.</p> <p>③ (현행과 같음)</p>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u>구성한다</u>.</p> <p>③ ~ ⑤ (생 략)</p>	<p>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6(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도시청결담당 주사가 된다</u>.</p> <p>② (생 략)</p>	<p>제3조의6(간사 및 수당) ① ----- ----- ----- <u>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 (생 략)</p> <p>② 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기 금출납원은 <u>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 다</u>.</p> <p>③ (생 략)</p>	<p>제4조(기금회계직공무원) ① (현행 과 같음)</p> <p>② ----- ----- <u>기금업무 담당팀장으</u>----- --.</p> <p>③ (현행과 같음)</p>

〈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생 략)</p> <p>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 금출납원은 <u>도로굴착팀장</u>으로 한 다.</p> <p>③ (생 략)</p>	<p>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기금업무 담당팀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u>구성한다</u>.</p> <p>③ (생 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도로굴 착팀장</u>이 된다.</p> <p>⑤ (생 략)</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기금업무 담당팀장</u>-----.</p> <p>⑤ (현행과 같음)</p>